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7099
등록일자	2015. 10. 2.
결재일자	2015. 10. 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송미영	박정숙	代박정숙	조인동	10/05 문석진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규제개혁팀장 주무관	임근래 김성기 이창조 김오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서 대 문 구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 I 큰 거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III 제 정 이 유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III 주 요 내 용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3조)
  - 가구원의 보호, 간병,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 또는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고시원 등 비정형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기간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4조)

-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 지원연장 결정, 지원의 중단 또는 비용 환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IV 추진 일정

- 관련부서 협의 : 2015. 9. 1 ~ 9. 7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제심사 : 2015. 9. 20
- 입법예고 : 2015. 10. 7 ~10. 27(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5. 11월중
- 공포·시행 : 2015. 11월중

V

## 행정 사항

- 입법예고 공고문 구보 게재 의뢰 : 홍보과
- 입법예고 공고문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붙임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질병·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간병 또는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사람 중 아래의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보장이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9. 과다채무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하였거나 심사중인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붙임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 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을 대신함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3조)

- 가구원의 보호, 간병,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 또는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고시원 등 비정형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기간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4조)

-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 지원연장 결정, 지원의 중단 또는 비용 환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609 팩스 02-3140-8377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	기 타
	찬	반		